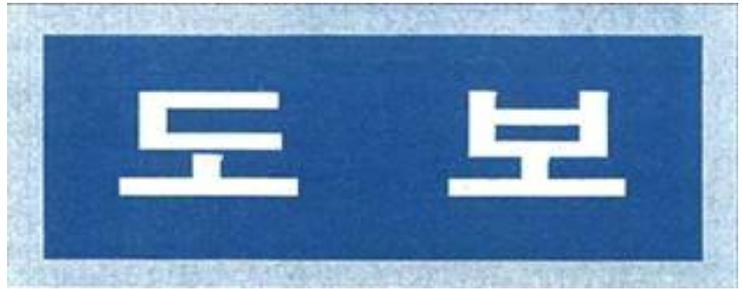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812호 2021. 10. 1.(금)

www.jeonbuk.go.kr

조 례

- 전라북도 조례 제4993호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
- 전라북도 조례 제4994호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5
- 전라북도 조례 제4995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전라북도 조례 제4996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전라북도 조례 제4997호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30
- 전라북도 조례 제4998호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33
- 전라북도 조례 제4999호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36
- 전라북도 조례 제5000호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전라북도 조례 제5001호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9
- 전라북도 조례 제5002호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42
- 전라북도 조례 제5003호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44
- 전라북도 조례 제5004호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 전라북도 조례 제5005호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48
- 전라북도 조례 제5006호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 51
- 전라북도 조례 제5007호 전라북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54
- 전라북도 조례 제5008호 전라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57
- 전라북도 조례 제5009호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규 칙

- 전라북도 규칙 제3175호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2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1-3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0

회람									
-----------	--	--	--	--	--	--	--	--	--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라북도 고시 제2021-30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5
○ 전라북도 고시 제2021-307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일부 준공 고시	78
○ 전라북도 고시 제2021-309호 2022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고시	79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4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80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81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82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64호 공인 등록 공고	83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81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정강복지센터)	84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93호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85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95호 공시송달 공고	86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9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87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609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88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610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89

도지사 지시사항

○ 2021. 9. 27.(월) 현안보고 간부회의 시 지시사항	91
--	----

시군행정

○ 군산시 공고 제2021-1864호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2단계 2차공사완료 공고	93
○ 군산시 공고 제2021-187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95
○ 임실군 공고 제2021-1083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1단계 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	97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0.)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 조례 제4993호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장”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기관장을 칭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학교스포츠클럽”과 “전문스포츠클럽”을 통칭한다.
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5. “전문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로 진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다음 각 목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가.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를 경기단체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전문스포츠클럽
 - 나.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학교에서 육성이 어려운 학교운동부를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단체나 클럽에 위탁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전문스포츠클럽
6.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를 의미한다.
7.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8.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9.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2. 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한 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스포츠클럽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2. 스포츠클럽과 관련한 국내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
3. 제2호의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확충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설 등의 확충)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사무실
2.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사무기기
3.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제9조(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① 교육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서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종목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사단법인·경기단체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운동부가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 자체의 육성이 어려운 학교운동부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을 선정하고, 관련 사무를 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받은 전문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전문스포츠클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소속 학교 학생선수 학사관리
- 2. 전문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3. 전문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관계 유지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포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 교육감은 전문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

라 결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0.)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 조례 제4994호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명의 위원은 법관”을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1.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p>2.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구성) ① ----- ----- ----- 13명-----.</p> <p>② ----- ----- -----.</p> <p>1.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 ----- -----.</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0.)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 조례 제4995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 ①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도립학교의 명칭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각 위원회가 관할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위원회: 고등학교, 특수학교
2.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신설학교의 명칭 제정 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상지역 예비학부모 등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해당 학교 명칭 제정·변경 사유 발생시 소집되고, 사안 종료시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행정실 설치) 학교에 행정실을 둔다.

별표 1 전주시의 전주성현유치원의 위치란 중 “만성동 1275-1”을 “만성남로 39-7”로 하고, 같은 표 전주시의 전주푸른샘유치원의 위치란 중 “효자동2가 산63-1”을 “홍산로 80”으로 하며, 같은 표 군산시의 군산도담유치원의 위치란 중 “산북동 3623-2”를 “칠성1길 26”으로 하고, 같은 표 군산시의 군산도담유치원란 다음에 군산시의 군산가람유치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군명	명 칭	위 치	비고
군산시	군산가람유치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73번지	

별표 1 군산시의 회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군산시의 군산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군명	명 칭	위 치	비고
군산시	군산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일원	

별표 1 군산시의 명칭란 중 “군산시 42원”을 “군산시 44원”으로 하고, 같은 표 명칭란 중 “합계 368원”을 “합계 370원”으로 한다.

별표 2 군산시의 회현초등학교란 다음에 군산시의 군산금빛초등학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군명	명 칭	위 치	비고
군산시	군산금빛초등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일원	

별표 2 군산시의 명칭란 중 “군산시 56교”를 “군산시 57교”로 하고, 같은 표 명칭란 중 “합계 423교”를 “합계 424교”로 한다.

별표 3 전주시의 전주효정중학교란 다음에 전주시의 전주만성중학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군명	명 칭	위 치	비고
전주시	전주만성중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 803	

별표 3 전주시의 명칭란 중 “전주시 31교”를 “전주시 32교”로 하고, 같은 표 정읍시의 명칭란 “정읍여자중학교”를 “샘고을중학교”로 하며, 같은 표 정읍시의 명칭란 “정일여자중학교”를 “정일중학교”로 하고, 같은 표 김제시의 명칭란 “김제여자중학교”를 “한들중학교”로 하며, 같은 표 명칭란 중 “합계 161교”를 “합계 162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명 칭	위 치	적 용 일	비 고
군산가람유치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73번지	2022.3.1.	신설
군산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일원	"	"
군산금빛초등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일원	"	"
전주만성중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 803	"	"
샘고을중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초산로 110	"	교명변경
정일중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511	"	"
한들중학교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137	"	"

제2조(도로명 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시행 후 제2조 도립학교의 위치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시군명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전주시	전주성현유치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75-1	전주성현유치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남로 39-7
	전주푸른샘유치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산63-1	전주푸른샘유치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80
군산시	<신설>	<신설>	군산가람유치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73번지
	<신설>	<신설>	군산금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일원
	군산도담유치원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23-2	군산도담유치원	전라북도 군산시 철성1길 26

【 별표 2 】

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시군명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군산시	<신설>	<신설>	군산금빛초등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일원

【 별표 3 】

중학교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시군명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전주시	<신설>	<신설>	전주만성중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 803
정읍시	정읍여자중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초산로 110	샘고을중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초산로 110
	정일여자중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511	정일중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511
김제시	김제여자중학교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137	한들중학교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137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0.)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 교육감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 조례 제4996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본청”을 “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를 각각 “취득·처분”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담당”을 “재산·학부모지원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으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의 대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로 하며,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그 밖에 필요한”을 “그 밖에 공유재산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7.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8. 주위환경 및 이용현황

제13조제1항 본문 중 “그에 속하는 예산”을 “예산”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를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얻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7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 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제2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14호”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토석채취료는 채취한 토석을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8조에 따른 건물대부료 산출은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감액비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8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제32조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0

제32조의2 중 “지역주민의 범위는”을 “지역주민은”으로, “무상대부 신청일”을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공고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3호 중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을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를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로 한다.

제3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음
-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 내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 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5조 중 “소속 공무원” 을 “소속 공무원 등(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계약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 사용자 “라 한다)” 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 사용자 “라 한다)은” 을 “사용자는” 으로 한다.

제49조 중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 을 “관사관리대장” 으로 한다.

제51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본 비품(냉장고, 가스레인지 또는 전기레인지, 세탁기)

제52조제1호 중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를 “사용자가”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무원이” 를 “사용자가” 로 한다.

제61조 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을 “감정평가법인등”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폐교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납부 연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의 납부 연기를 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한 기한까지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납부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재산 일시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물대부료를 산출하여 대부한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1일 기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2,500	7,500	12,500	1실당
시 청 각 실	12,500	25,000	50,000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6,000	17,500	30,000	
대 운 동 장	12,500	17,500	3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 지역 사용료 고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5,000	25,000	1실당
시 청 각 실	25,000	50,000	100,000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2,500	35,000	60,000	
대 운 동 장	25,000	35,000	6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 지역 사용료 고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2. ----- <u>도교육청</u> ----- -----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과 교육장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제4조(위임사무) ① ----- -----.
1. 교육감이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 -----
가. 삭 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u>취득</u> <u>· 처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u>	다. ----- <u>취득</u> <u>· 처분</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3.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u>취득</u> <u>· 처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u>	다. ----- <u>취득</u> <u>· 처분</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u>	<u><삭 제></u>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도교육청은 재무과 재산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교	⑦ ----- -----

<신 설>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다.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 ③ (생 략)

④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생 략)

⑤ ~ ⑦ (생 략)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주위환경 및 이용현황

9. 그 밖에 공유재산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예산 -----
-----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
----- 받아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1조(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대상 등) -----

1. (생략)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생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 5.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3. (생략)

4. 삭제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생략)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의 필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9.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 5.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5. -----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

6. (현행과 같음)

7. -----
----- 영제29조제1항제13호 -----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9. (현행과 같음)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2.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을 말한다]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사람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토석채취료는 채취한 토석을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8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서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서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8조에 따른 건물대부료 산출은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신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감액비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8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

1.·2.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 100분의 50
- 2. 영 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내 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 : 100분의 30

<신 설>

제32조의2(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무상대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한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삭제
- 2. (생략)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⑤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

-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0

제32조의2(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 지역주민은 -----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공고일 -----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

- 2. (현행과 같음)
- 3. ----- 수급자-----

4. ~ 7. (생략)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 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이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남은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생략)

<신설>

4. ~ 7. (현행과 같음)

8. -----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2.·3. (현행과 같음)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음

5. (현행과 같음)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 내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5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교육감·부
교육감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
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
자”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
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제49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
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
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
한다.

제51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1. ~ 9. (생략)

<신 설>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
서 매각하는 경우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
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
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
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
각하는 경우

제45조(정의) -----
----- 소속 공무원 등(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계약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사용자”라 한다)-----
-.

제48조(사용책임) 사용자는 -----
-----.

- 1. ~ 5. (현행과 같음)

제49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
----- 관사관리대장-----
-----.

제51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 ~ 9. (현행과 같음)

10. 기본 비품(냉장고, 가스레인지 또는 전기레인지,

제52조(사용료의 면제) 제46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생략)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1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에 의뢰한다.

[별표 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1일 기준)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5,000	25,000	1실 당
시청각실	25,000	50,000	100,000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2,500	35,000	60,000	
대운동장	25,000	35,000	6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세탁기)

제52조(사용료의 면제) -----

-----.

1. 사용자가 -----
2. (현행과 같음)
3. ----- 사용자 -----

제61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법인등 -----
-----.

[별표 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1일 기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2,500	7,500	12,500	1실 당
시청각실	12,500	25,000	50,000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6,000	17,500	30,000	
대운동장	12,500	17,500	3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5,000	25,000	1실 당
시청각실	25,000	50,000	100,000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2,500	35,000	60,000	
대운동장	25,000	35,000	6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0.)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 조례 제4997호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북도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 창출 역량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책 수립 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원활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지식재산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시책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발명교육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식재산 관련 법인·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교육 진흥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교육 활성화 방안
3. 지식재산교육 운영에 관한 교원연수 지원
4. 학교 지식재산교육 활동 운영 지원
5. 지식재산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및 적용 지원
2. 지식재산 창출 관련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 관련 우수 학생 발굴 및 표창
2. 지식재산 창출 관련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및 지식재산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등에 관한 서비스 활용 교육 지원

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인식 제고 활동 등)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98호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날부터 14일 이내에”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처리기간 14일”을 “처리기간 10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결정기간 14일”을 “결정기간 10일”로 한다.

제2조(「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심의결과”로 한다.

제3조(「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후단 중 “14일”을 “10일”로 한다.

제4조(「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전라북도 수입증지로 납부”를 “납부”로 한다.

제5조(「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성명	생년월일
이의 신청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열람등요구 내용	
-------------	--

통지서수령 유무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우 , 주소)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10일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99호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3. 그 밖의 용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보급 및 이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 기본방향
-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4.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전라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 판매가격의 차액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비용
-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4.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경우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5000호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도지사”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5001호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제안 또는 건의
2. 다른 시·도 및 도내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3. 청소년 관련 정책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군수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 공무원,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

다.

제6조(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경우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결의한 자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의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등)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등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5002호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육아 등의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도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에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도정운영에 유익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4.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등의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5003호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 및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산모”란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하며,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을 포함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친권자”란 「민법」 제90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정책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수립하는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정책의 추진체계
3.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관련 현황 조사
4.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정 난임 및 출산 지원 사업
2. 장애인가정 자녀 양육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정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4.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안정적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출산지원금을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시장·군수는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폐지
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5004호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당연직 :”을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5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을 각각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의 20)이상일 것”을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경우 :”를 “경우:”로, “20이상일”을 “20 이상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세 감면조례」”를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5005호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액비 생산 및 에너지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 2. “가축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
- 3.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생산 및 살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 5.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이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자원화조직체는 고품질의 퇴비·액비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활용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가축분뇨 자원순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2.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 3. 연도별·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
- 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수집·운반·가공 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
- 2.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지원 사업
- 3.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
- 4.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 6.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① 축산농가와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퇴비·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 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퇴비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공정규격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 2. 액비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으로 생산하여야 한다.(다만, 질소 전량의 최소 함유량은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3.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법 제12조2에 따라 고시한 공정규격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③ 자원화조직체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자원화시설 출입구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소독설비 및 실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지도 점검하고 기준 미달 고체연료나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퇴비로 전환 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비료화, 바이오에너지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순환 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2. 퇴비·액비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3.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관한 사항
- 4. 가축분뇨 자원순환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제9조(홍보 및 컨설팅)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우수한 농가, 자원화조직체를 적극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을 위해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 컨설팅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제외)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실천하지 아니한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하여는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자원화조직체
- 2. 액비 살포 보조금을 거짓으로 지원받은 경우
- 3. 액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살포한 경우

③ 제1항의 지원 제한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5006호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라북도에 소
제한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법 제2조제6항의 지역을 말한다.
4. “창업보육센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
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
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4.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5.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6.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전라북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 투자 생태계 활성화
4.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6.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및 관련 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

하여 도내 일정지역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공유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도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세제 지원)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융자) 도지사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5007호

전라북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을 통해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
- 3. 게임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 4. 게임산업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 5. 재원 조달 방안
- 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 1. 게임산업 전문 인력 양성
-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 3. 게임사업의 해외 시장 진출
- 4.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업 지원

5. 건전한 게임 습관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6. 국제게임대회 개최 지원

7. 그 밖에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 게임업체에 대하여 게임개발사업, 게임보급사업, 게임국제진출사업 등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지원) 도지사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제8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 창업지원 및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아카데미 운영
- 3. 입주기업 창업 공간 운영
- 4. 그 밖에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게임치료센터) ①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게임치료센터(이하 “치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및 검사
- 2. 게임과몰입·중독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 3.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제10조(지원센터 및 치료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 및 치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도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및 법인, 단체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5008호

전라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따른 전라북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전라북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전,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 2. 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도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도의 문화적 특색 반영
- 2.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 3.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영향평가 교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담직원의 지정)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연구
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평가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전담기관 지정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5009호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현수식”을 “주유소·가스충전소·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과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영상표시장치 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을 “「공항시설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상간판”을 “간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호제1호라목”을 “영 제17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다만 이 경우 제4조의2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현수식”을 “매다는 방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의 규격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

제9조제6호 본문 중 “돌출간판”을 “간판”으로 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등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현수식”을 “매다는 방식”으로 한다.

제2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노면(제7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가”를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를 “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다.”를 “3.”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제21조제3항제2호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산업 · 교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집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 「항만법」에 따른 항만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驛舍)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 · 휴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 · 공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범인묘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서 당해시설물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규칙 제3175호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비한”을 “모두 구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를 “재화”로, “수행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로, “목적 실현하는 것일”을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 나.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
 -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1)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경우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
 - 1)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2)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할 것
 -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4. 「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익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

어 있을 것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을 갖출 것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에”를 “신청서와”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류(세부 각 목의 서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사업계획서 또는 실적(실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2. 제4조제2호에 따른 영업활동 수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신청일로”를 “신청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할 시장·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별도”를 “따”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FAX.)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영농·영어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으로 보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 종				
⑪ 사업분야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보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input type="checkbox"/> 보육 <input type="checkbox"/> 산림 보전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가사 간병 <input type="checkbox"/>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input type="checkbox"/> 고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유통 <input type="checkbox"/> 기타			
<p>「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p> <p>전라북도지사 귀하</p>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기업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제____ - __호

지정유형 : _____형

기업명 :

대표자 :

소재지 :

지정기간 : ____ . ____ . ____ . ~ ____ . ____ . ____ .

위 기업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지사 (인)

■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 대표자		
③ 연락처 (휴대폰)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조직형태		⑦ 지정유형		
⑧ 지정번호	제0000 - 00 호	⑨ 지정일자	0000. 00. 00	
⑩ 신청내용				
⑪ 신청사유	* 필요시 별지 작성			
<p>「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p> <p>전라북도지사 귀하</p>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업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㉔[], ㉕[], ㉖[])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 (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규약관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p>◆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p>	
<p>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p>	<p>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p> <p>1-2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단,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아젠다(지역의제, 범위, 해결방안) 설정</p> <p>1-3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p>
<p>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 방안)</p>	<p>2-1 구체적 사업내용</p> <p>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p> <p>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p> <p>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p> <p>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p>
<p>◆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p>	
<p>3. 사업 역량</p>	<p>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p> <p>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조직도 첨부)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p> <p>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p>
<p>4. 사업 목표 (3개년 이상)</p>	<p>4-1 연차별 매출규모</p> <p>4-2 고용창출 계획</p> <p>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및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등)</p> <p>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 경제적 가치 - 환경적 가치

5. 월별추진계획 (1개년)	세부 사업화 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비고
6. 대표자관련	6-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600자 이내) 6-2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향후 목표 및 포부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지역사회내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 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전라북도 고시 제2021-3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m)
기정	지방도	709	옥서 ~성산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일원	15,082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10-2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79-6	-	620
변경	지방도	709	옥서 ~성산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일원	8,989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10-1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79-6	-	503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 2021. 1. 1. ~ 2022.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교통과(063-280-3621)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063-290-6737)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709	노선명	육서~성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10-1 ~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79-6 - 범 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51	8~10	보조 간선 도로	3,950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369-7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142-1도	일반 도로		전라북도 고시 제2010-141호 (2010.6.11.)	
변경	소로	2	951	8~10	보조 간선 도로	3,833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369-7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142-1도	일반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951호선	소로 2-951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변경 및 연장 축소 B = 8~10m L = 3,950m → 3,833m 감) 117m 	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변경

4.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전라북도(도로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열람 가능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도로구역(㎡)			주소	소유자
	시	면	리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88,909	15,082	8,989	감)6,093		
1	군산	성산	둔덕	210-1	답	101	0	28	증)28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	조**
2	군산	성산	둔덕	210-2	도	418	295	0	감)295		전라북도
3	군산	성산	둔덕	211	전	1123	0	851	증)851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	양**
4	군산	성산	둔덕	212-1	답	2,278	0	1,115	증)1,115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	정**
5	군산	성산	둔덕	212-2	답	1,457	0	119	증)119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	전**
6	군산	성산	둔덕	233-5	수	231	0	13	증)13		환경부
7	군산	성산	둔덕	233-3	수	633	0	240	증)240		환경부
8	군산	성산	둔덕	산 92-1	구	491	0	158	증)158		군산시
9	군산	성산	둔덕	산92	임	20,335	0	80	증)80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	남***** 중중
10	군산	성산	둔덕	249-4	구	154	0	154	증)154		군산시
11	군산	성산	둔덕	249-1	답	1,840	0	1,088	증)1,088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 엘지 니꼬아파트 ***동 ***호	신**
12	군산	성산	둔덕	249-2	답	572	0	255	증)255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 엘지 니꼬아파트 ***동 ***호	신**
13	군산	성산	둔덕	250	답	2,797	0	634	증)634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	양**
14	군산	성산	둔덕	283-4	답	2,053	0	1	증)1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	석**
15	군산	성산	둔덕	283-10	답	749	0	348	증)348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	석**
16	군산	성산	둔덕	283-14	수	102	0	102	증)102		환경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도로구역(㎡)			주소	소유자
	시	면	리				기정	변경	증.감		
17	군산	성산	둔덕	283-3	답	853	0	55	증)55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	석**
18	군산	성산	둔덕	281-4	수	50	0	50	증)50		환경부
19	군산	성산	둔덕	283-12	수	63	0	63	증)63		환경부
20	군산	성산	둔덕	283-11	수	7	0	2	증)2		환경부
21	군산	성산	둔덕	281-5	수	228	0	136	증)136		환경부
22	군산	성산	둔덕	524	도	2,529	1,112	360	감)752		농림축산 식품부
23	군산	성산	둔덕	282-8	수	140	0	70	증)70		환경부
24	군산	성산	둔덕	282-3	전	217	0	50	증)50	군산시 남수송*길 **(수송동)	양**
25	군산	성산	둔덕	282-2	답	167	0	86	증)86	군산시 남수송*길 **(수송동)	양**
26	군산	성산	둔덕	283-15	답	1,323	0	64	증)64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	이**
27	군산	성산	둔덕	279-2	도	109	62	3	감)59		국토교통부
28	군산	성산	둔덕	279-6	답	58	0	1	증)1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	박**
29	군산	성산	둔덕	195-2	도	1,564	1,564	0	감)1,564		전라북도
30	군산	성산	둔덕	527	도	1,071	1,071	0	감)1,071		전라북도
31	군산	성산	둔덕	234-2	답	522	0	175	증)175	군산시 남수송*길 **(수송동)	양**
32	군산	성산	둔덕	525	구	31,318	2,879	251	감)2,628		농림축산 식품부
33	군산	성산	둔덕	233-2	답	459	0	459	증)459	군산시 남수송*길 **(수송동)	양**
34	군산	성산	둔덕	246-2	도	108	108	0	감)108		전라북도
35	군산	성산	둔덕	235-2	도	1,390	1,390	0	감)1,390		전라북도
36	군산	성산	둔덕	233-1	유	1,881	0	1,221	증)1,221		농림축산 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도로구역(㎡)			주소	소유자
	시	면	리				기정	변경	증.감		
37	군산	성산	둔덕	246-1	도	224	224	0	감)224		전라북도
38	군산	성산	둔덕	산44-1	도	266	266	0	감)266		전라북도
39	군산	성산	둔덕	246	대	1,209	0	43	증)43	군산시 동신영길 **(신영동)	김**
40	군산	성산	둔덕	246-3	수	514	0	184	증)184		환경부
41	군산	성산	둔덕	246-4	수	146	0	146	증)146		환경부
42	군산	성산	둔덕	256-1	도	497	497	0	감)497		전라북도
43	군산	성산	둔덕	247-1	도	994	994	0	감)994		전라북도
44	군산	성산	둔덕	산58-1	도	340	340	0	감)340		전라북도
45	군산	성산	둔덕	산59-2	도	136	136	0	감)136		전라북도
46	군산	성산	둔덕	산59	임	518	19	0	감)19	군산시 산북동 ****	양**
47	군산	성산	둔덕	250-2	수	186	0	18	증)18		환경부
48	군산	성산	둔덕	산59-1	도	9	9	0	감)9		전라북도
49	군산	성산	둔덕	283-5	대	259	0	259	증)59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	석**
50	군산	성산	둔덕	250-1	도	1,117	1,117	0	감)1,117		전라북도
51	군산	성산	둔덕	283-13	수	104	0	104	증)104		환경부
52	군산	성산	둔덕	251-1	도	1,276	1,276	0	감)1,276		전라북도
53	군산	성산	둔덕	산64-5	도	445	445	0	감)445		전라북도
54	군산	성산	둔덕	279-3	도	1,278	1,278	3	감)1,275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1-30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m)
기정	지방도	861	옥곡~산내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일원	2,257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1-3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1-2	-	100
변경	지방도	861	옥곡~산내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일원	2,786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1-3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1-2	-	100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남원 장항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 2021. 1. 1. ~ 2022.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교통과(063-280-3621)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063-290-6737)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861	노선명	옥곡~산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1-3 ~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1-2 - 범 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31	8	집산 도로	16,390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563-1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215-16	일반 도로	-	전라북도 고시 제2009-227호 (2009.7.10.)	
변경	소로	2	931	8	집산 도로	16,390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563-1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215-16	일반 도로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931	소로 2-931	◦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 변경	◦ 남원 장항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

4.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전라북도(도로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열람 가능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	도로구역 (㎡)			소유자	
	시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합 계						11,886	2,257	2,786	증)529		
1	남원	산내	내령	253-2	도	381	10	10	-	국(건설부)	국(건설부)
2	남원	산내	내령	253-1	도	36	18	18	-	산내면 내령리 **	홍**
3	남원	산내	내령	255-3	도	589	548	548	-	국(건설부)	국(건설부)
4	남원	산내	내령	255-1	도	60	60	60	-	산내면 내령리 **	홍**
5	남원	산내	내령	산61-3	도	979	879	879	-	국(건설부)	국(건설부)
6	남원	산내	내령	산61-2	임야	6,657	-	529	증)529	임실군 관촌면 공덕*길 ***	정**
7	남원	산내	내령	748	도	2,667	268	268	-	국(건설부)	국(건설부)
8	남원	산내	내령	256-2	도	165	165	165	-	국(건설부)	국(건설부)
9	남원	산내	내령	256-1	도	50	50	50	-	산내면 내령리 ***	김**
10	남원	산내	내령	257-1	도	272	229	229	-	국(건설부)	국(건설부)
11	남원	산내	내령	255-5	도	30	30	30	-	국(건설부)	국(건설부)

전라북도 고시 제2021-307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일부 준공 고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중 일부 공공시설과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10월 1일

□ 일부준공 고시 내역

1. 조성사업의 명칭 :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정읍시장
3. 주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4. 조성사업을 일부 완료한 지역의 위치 : 전북 정읍시 신정동 1602
5. 조성사업을 일부 완료한 지역의 면적 : 여관1 6,621.3㎡(건축물 준공)

구분	가구 및 획지		일부준공내용			비고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숙박시설지구	메이플빌리지	여관1	6,621.3	1,317.01	3,905.25	19실

6. 일부 준공년월일 : 2021. 9. .
7. 주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일부준공 내역 조서

구분		전체면적(㎡)	일부준공면적(㎡)	잔여면적(㎡)	비고
숙박시설지구	여관 1	6,621.3	6,621.3	0	

9. 준공도면 : 전북도청 관광총괄과, 정읍시청 관광과 비치

전라북도 고시 제2021-309호

2022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고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전라북도 조례 제 4795호, 2020.07.13. 일부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고 시 명 : 2022년도 전라북도 생활임금

2. 고시 이유

- 전라북도지사과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할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2022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 시간급 10,835원 / 월 2,264,515원(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 전라북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
 - ※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 제외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4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10월 1일

업체명	업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유한회사 가람이엔탑	수질	한종희	제193호	군산시 조촌4길 25(조촌동)	'21.08.26.
유한회사 엠제이건설산업	수질	주병후	제194호	군산시 미장14길 33, 2층(미장동)	'21.09.17.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1. 7. 1. ~ 2022.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도로 명칭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도로사업 (고창 영산기맥 숲재 생태터널공사)	지방도 898호선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산165 ~ 산38-1 일원	○ 연장 : 100m ○ 폭원 : 8~14.2m	고창군(생태환경과)/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및 면적

- 생태터널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 (당초) 1,365㎡ (변경) 2,014㎡

3.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고창 영산기맥 숲재 생태터널공사	전라북도(도로교통과) 고창군(생태환경과)	2021. 10. 1. ~ 2021. 10. 15.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10. 1. ~ 2021. 10. 15.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전화번호 : 063-280-3621),
고창군 생태환경과(전화번호 : 063-560-2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1. 10. 1. ~ 2023.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도로 명칭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도로사업 (임실 고산지구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지방도 745호선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957-1 ~ 974 일원	○ 연장 : 180m ○ 폭원 : 9~12.2m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및 면적

-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 (당초) 2,296㎡ (변경) 2,355㎡

3.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임실 고산지구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전라북도(도로교통과)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	2021. 10. 1. ~ 2021. 10. 15.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10. 1. ~ 2021. 10. 15.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전화번호 : 063-280-3621),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전화번호 : 063-290-67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64호

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10월 1일

□ 공인의 등록

- 1. 공인등록 사유 : 의무소방대 운영
- 2. 공인의 개시일 : 2021년 9월 24일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등 록 공 인	
공 인 명	인 영
완주소방서	완주소방서 의무소방대 보통공사상심 사위원회의인
	완주소방서 의무소방대 보통공사상심 사위원장의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81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사단법인 정강복지센터)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10월 1일

□ 공 고 사 항

1. 허가번호 : 제 2021-58호
2. 허가일자 : 2021. 9. 28.
3. 법 인 명 : 사단법인 정강복지센터 (대표자 국정숙)
4. 사무소 소재지 : 군산시 장미1길 27. 201호(장미빌딩)
5. 주요사업
 - 노인일자리 사업
 - 노인장기요양 관련사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위·수탁사업
 -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9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등으로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건설업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주)성민종합건설 (김대*)	건축공사업 (14-0443)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15길 1, 2층	건설업 등록말소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사항 미보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

《 안내 사항 》

○ 이 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기본재산이 소멸된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인 기본재산 멸실에 따른 재산의 보충·확보 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공고명칭 : 「의료법인 기본재산 멸실에 따른 재산의 보충·확보 계획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내 용

법인명	대표자	주사무소	내용
의료법인 태운의료재단	서성재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1길 35	기본재산 멸실(소유권이전)에 따른 감소된 재산의 보충 방법 및 재산의 확보계획 등을 2021.11.8.(월)까지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 기간까지 기본재산에 대한 명확한 확보방안 등이 없을 시에는 의료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진행 예정임.

3. 공고기간 : 2021. 09. 28 ~ 2021. 10. 13

4. 기타사항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공고기간 만료 후 2021년 11월 8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하고자 하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063-280-24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1-159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10월 1일

1. 단 체 명 : 하나예술장애인창작센터
2. 대 표 자 : 전해진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13길 9-3
4. 주요사업
 - ① 문화, 예술,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제공
 - ② 장애인 국제문화, 예술 교류 및 정보교류
 - ③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전문적인 문화예술인과의 만남과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④ 각종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행사 개최
 - ⑤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각종 가료의 출판과 회보 발행
5. 변경사항 : 정관 변경(제36조, 제40조)
6. 변경등록일 : 2021. 9. 27.

전라북도 공고 제2021-1609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10월 1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29호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정보기술 대표 문혜숙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공성로 130, 107동 105호	2021.09.27.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1-1610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 10. 1.

전라북도지사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어독스
2. 허가번호 : 제2021-49호
3.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중앙로 175
4. 대표자 : 엄지영(1974.09.29.)
5. 주된사업
 - 유기동물의 구조 및 치료, 임시 보호 및 입양 활동
 - 해외 동물구조 단체와의 교류 및 해외 입양
 - 올바른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국내 동물구조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6. 변경사항 : 잔여재산 처분 규정 명확화, 기부금 공개 및 준용 규정 신설
7. 변경허가일자 : 2021. 9. 29.

사단법인 어독스 정관변경 내용

현 행	개 정 안
<p>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p> <p>제54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③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u>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u></p>	<p>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p> <p>제54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③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u>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단체)에게 귀속하도록 한다.</u></p>
<p>제8장 부칙</p> <p><신 설></p>	<p>제8장 부칙</p> <p><u>제6조(기부금공개) 본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u></p>
<p><신 설></p>	<p><u>제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u></p>

도지사 지시사항

◇ 2021. 9. 27.(월) 현안보고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 업무	<p>○ 현안에 대한 명확한 상황판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실국에서 추진중인 현안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 정책 흐름에 대한 이해 및 업무연찬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도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 <p>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조직 내부, 관련기관, 정치권, 외부전문가, 도민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전 실·국/ 협조:)</p>
		<p>○ 10월 도정질의, 국정감사 등 대응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정질의(10.6.~10.7.), 국정감사(10.14.)를 앞둔 중요한 시점이므로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국정감사 이후에는 국회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전 실·국/ 협조:)</p>
		<p>○ 공공기관 추가이전 동향 및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회 세종시 이전 등 급변하는 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전략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바람. -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시·도 의견 수렴 및 공통의견을 정리하여 정책 방향성을 정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시 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할 것임.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정책기획관/ 협조:)</p>
		<p>○ 국가예산 확보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부터 국가예산 확보액, 증가율 등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고 시기별 주요 특이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국가예산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정책기획관/ 협조:)</p>
		<p>○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동행의 스마트팜 현장행정을 실시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성공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국가 책임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 논리를 마련하고 관련 4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공동 대응 및 정부부처 설득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농식품인력개발원/ 협조:)</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p>○ 만경강 살리기 협약 후속대책 추진</p> <p>- 지난 8월 환경부, 도, 수공, 4개 시군, 환경단체간 협약을 통해 만경강의 취수원이 용담댐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물환경관리과/ 협조:)</p>
		<p>○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p> <p>-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합의(9.2.)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공공의료 확충 추진 등에 있어 장애요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의정협 의제 조기 가동 건의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필요성 논리 마련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공조하며 대응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보건의료과/ 협조:)</p>
		<p>○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p> <p>-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 평가’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을 철저히 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추진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공항하천과/ 협조:)</p>
		<p>○ 국제교류 지속추진 및 비대면 교류 확대에 따른 콘텐츠 발굴</p> <p>- 코로나 장기화로 정상적인 국제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제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비대면 방식의 교류 확대함에 따라 흥미로운 콘텐츠를 발굴하여 대상 국가와 공유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국제협력과/ 협조:)</p>

군산시 공고 제2021-1864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사업 2단계2차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8-69(2018. 6. 1.)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시행한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2단계2차 조성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10월 1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조촌동 2-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2단계2차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90m²(도로) - 금회 준공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결정	중로	1	120	21~27	집산 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완화 차로 위치 변경
시행	중로	1	120	21~27	집산 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 (주)디오션시티쓰리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 (주)디오션시티퍼스트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주)디오션시티쓰리, (주)디오션시티퍼스트

5. 사업기간 : 2018. 6. 1. ~ 2021. 7.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가. 중로1-120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조촌동	2-87	장	23,414	10,595	페이퍼 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2		2	장	56,356	45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3		2-28	장	27,839	45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계		3필지			10,685						

7.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실음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21-187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10월 1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2) 명 칭 : 옥산면 옥산리 청암산 주차장(119호) 조성사업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
 - 당초 : 주차장 119호 : A=3,790㎡
 - 변경 : 주차장 119호 : A=8,011㎡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청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당초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 옥산리	681	답	4,262	2,07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	옥산면 옥산리	682	전	635	15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	옥산면 옥산리	683	답	2,371	1,27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	옥산면 옥산리	683-1	잡	743	28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1필지			8,011	3,790						

- 변경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 옥산리	681	답	4,262	4,26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	옥산면 옥산리	682	전	635	63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	옥산면 옥산리	683	답	2,371	2,37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	옥산면 옥산리	683-1	잡	743	74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1필지			8,011	8,011						

임실군 공고 제2021-1083호

임실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1단계 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

임실군 고시 제2021-90호(2021.07.3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의 1단계(골프장 27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임 실 군 수
2021년 10월 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산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전주 샹그릴라 C.C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 1,068,718.9㎡ (1단계 : 골프장 27홀 및 클럽하우스 등)
※ 전체면적 : 1,179,444.9㎡
4. 사업시행자
 - 가. 주 소 :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수지로 559-90
 - 나. 성 명 : 광산관광개발(주) 대표 추연익
5. 사업시행기간 : 2006. 05. 31. ~ 2021. 7. 30.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도보이용안내

도보 이용 안내

- ☞ 도보는 매주 금요일자로 발행됩니다.
- ☞ 도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도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도보는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접속
 - 인기검색어 → 전북도보
 - 자치법규 → 전북도보
 - 도정정보 → 도정자료 → 전북도보

도보게재 의뢰 안내

- ☞ 근거법규 : 전북도보발행규정 제11조 및 도보게재위탁계약서 제3조
- ☞ 원고 접수 마감 : 매주 화요일
- ☞ 도보게재 의뢰 방법
 1.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 문서사송 혹은 FAX(063-280-2299)
⇒ 개별법령별 도보게재 근거 법규를 명시
 - 예시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조제○항근거
 2. 게재문안(공문 첨부물) 1부
 - 도청 실, 과, 사업소, 시·군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송부하시고
 - 기타 도보위탁게재 계약기관은 USB메모리로 제출하거나
E-mail(jbdobo@korea.kr)로 보내주셔야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